

## [서식 예]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수신인 : 1. 000

서울 강북구 수유동 〇〇〇

2. 삼성카드 주식회사 (110111-\*\*\*\*\*\*\*)서울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2가)대표이사 ○○○

발신인: 김〇〇

서울 ○○구 ○○로 ○○길 ○○, ○○○호 (○○동, ○○연립) (연락전화 010-\*\*\*\*-\*\*\*\*)

- 1. 최고인은 2015. 7. 18. 수신인 1. ○○○에 전화하여 음경동맥 혈류 충전기 (이하 '위 물품'이라 함)를 80만원에 구입하되, 그 대금은 최고인의 삼성카 드로 5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최고인은 위 물품을 2015. 7. 21. 수령하였습니다.
- 2. 그런데 위 물품에 대한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할부거래 라 할 것이고, 최고인은 충동구매로 인하여 이를 철회하고자 하며, 아래 적시한 바와 같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최고서로 청약철회를 통보하니(물품은 오늘 ○○○에 반송 처리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



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①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 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2000. 0. 0.

위 최고인 김〇〇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